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-55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0. 05. .

제출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법제처의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과제와 더불어 상위 법령과 불일치하는 내용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신뢰와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가.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변경 (안 제1조)

- 제1조 중 “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제2항”을 “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제4항”으로 변경

나. 「행정절차법」에서 규정한 입법예고 예외 사항 반영 (안 제5조)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조례·규칙의 제정·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행정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

## 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, 「행정절차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19. 11. 21. ~ 11. 28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3) 기획예산과의 위원회 사전심사 결과 : 해당없음
- 4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5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- 6) 제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심의회 심의·의결(2020.3.24.)

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제2항”을 “「법제업무 운영규정」 제20조제4항”으로 한다.

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다음”을 “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, 제26조 및 제66조의3, 「<u>법제업무 운영규정</u>」 제2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5조(입법예고 대상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.</p> <p>1. <u>단순히 행정내부의 사무처리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경우</u></p> <p>2. <u>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</u></p> <p>3. <u>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</u></p> <p>②·③ (생략)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「<u>법제업무 운영규정</u>」 제20조 제4항----- ----- ----- -.</p> <p>제5조(입법예고 대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「<u>행정절차법</u>」 제41조 제1항 ----- -----.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&lt;삭 제&gt;</p> <p>②·③ (현행과 같음)</p>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2. 미참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

## 3. 미참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

## 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한현진 (☎ 3153-8526)